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GHP 702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 품 명 : GHP 702

나. 제품의 용도 : 윤활제

다. 제조자 정보

제조회사의 이름 : 한일루켄(주)

제조회사의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1로56번길 22

긴급연락 전화번호 : 055) 345-9990~1

FAX : 345-9993

담당부서 : 영업부

작성부서 : 품질관리부

라. 작성일자 : 2004년 5월 21일

마. 개정일자 : 2017년 7월 06일 (개정 횟수 : 3회)

바. 공급자 정보 : 제조자 정보와 동일

2. 위험·유해성

가.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 해당 없음.

나. 눈에 대한 영향 : 약간의 자극을 줄 수 있음.

다. 피부에 대한 영향 : 약간의 자극을 줄 수 있고 장시간 또는 반복 접촉시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음.

라. 흡입시의 영향 : 자료 없음.

마. 섭취시 영향 : 약간의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음.

바. 만성 징후와 증상 : 자료 없음.

2.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2.2.1 그림문자 :



2.2.2 신호어 : 경고

2.2.3 예방조치문구

- ▶ 예방 : 1.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2.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 및 입자를 흡입을 피하십시오.
3.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 하지 마시오
- ▶ 대응 : 1.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2.피부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3.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전 세탁하십시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CAS NO	함량(%)	비고
Mineral Oil	64742 - 57 - 0	80 - 90	
Additive	14808 - 60 - 7	10 - 14	
	7782 - 42 - 5	2 - 5	
	61790 - 48 - 5	0.1 - 2	

4. 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다량의 물로 세척하고, 만약 통증이 지속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을 벗고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어내고 오염된 의복은 재사용 전에 세탁한다.
- 다. 흡입 했을 때 :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신선한 공기를 흡입한다.
- 라. 먹었을 때 : 즉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내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 마. 의사의 주의사항 :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여야 한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인 화 점 (°C) (base oil) : 약 280°C
- 나. 자 연 발 화 점 (°C) : 해당없음
- 다. 인 화 한 계 치 (Wt.%) : 최저-자료없음. 최고-자료없음
-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 해당없음
- 마. 소 화 제 : 포말, 건식화합포말, 이산화탄소
- 바. 소화 방법 : 소형 화재시는 이산화탄소, 모노래, 흡등을 사용하며, Malon소화기는 환경 문제를 유발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 화합물.
- 아.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 고압 물 분사기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눈과 피부에 제품이 접촉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보호안경, 보호장갑, 안전화와 안전복을 착용.
-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모래, 흙 또는 흡착포를 수거하며, 절대로 배수구로 누출 시켜서는 안된다.
-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정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소량 유출시 흡착포로 깨끗이 닦아내고 수거한 흡착포는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량 유출시는 흙이나 모래를 이용하여 턱을 만들고 흡착포 또는 흡수제를 이용하여 수집해서 처리는 소량 유출시와 같다.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 취급 요령 : 드럼 제품을 취급할때는 안전화 및 적당한 운반 장비를 사용해서 취급한다.
- 나. 보관 방법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습기가 없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8.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 가. 공학적 관리방법 : 연속 작업시 증기를 흡입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 나. 호흡기 보호 : 연속 작업시 방독면 등을 착용한다.
- 다. 눈 보호 : 작업중 제품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 라. 손 보호 : 반복 법촉시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 마. 신체 보호 : 피부 접촉을 최소화 시키고 안전복을 착용한다.
- 바. 위생상 주의사항 :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서 손을 씻는다.

9. 물리 화학적 특성

- | | |
|------------------------|-----------------------|
| 가. 외관 : 흑색 | 아. 산화성 : 해당없음 |
| 나. 냄새 : 중성, 고유의 냄새 | 자. 증기압 (mm Hg) : 해당없음 |
| 다. 수소이온 지수 (pH) : 해당없음 | 차. 비중 : 약 0.97 |
| 라. 용해도 : 해당없음 | 카. 분해계수 : 해당없음 |
| 마. 끓는점 : 해당없음 | 타. 증기밀도 : 해당없음 |
| 바. 녹는점 : 해당없음 | 파. 점도 : 해당없음 |
| 사. 폭발성 : 해당없음 | 하. 분자량 : 해당없음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 안정
- 나.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고온, 직사광선 및 산소와 같은 강산화제
-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일반 저장중에는 생성되는 유해물질이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 | |
|------------------|------------------------|
| 가. 급성경구독성 : 자료없음 | 마.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 |
| 나. 급성흡입독성 : 자료없음 | 바. 차세대영향 (생식독성) : 자료없음 |
| 다. 아급성 독성 : 자료없음 | 사. 발암성 영향 : 자료없음 |
| 라. 만성 독성 : 자료없음 | 아. 기타특이사항 : 자료없음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수생 및 생태독성 : 자료없음
- 나. 토양 이동성 : 자료없음
- 다. 잔류성 및 분해성 :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
- 라. 생물체내 축적 가능성 : 생물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 나. 폐기 방법 : 소각처리
- 다. 폐기시 주의사항 : 법에따라 인가된 폐유 재생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뢰. 절대로 임의 폐기하여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운송에 관한 정보

- 가. 선박 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해당없음
- 나. 운송시 주위사항 : 파손주의
-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자료없음

15. 법적 규제 현황

- 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나. 화학물질 관리법 등 타 부처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 제 4류 제 4석유류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가. 원자료의 작성 기관명 : 한일루켄(주)
- 나.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GHS), First revised edition, United Nations.
- 다. United State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라. EINECS(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 마.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바. NIOSH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사.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아. IUCLID Dataset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2000)
- 자. Transport of Dangerous Goods-UN
- 차. 한국산업안전공단

※ 이 자료는 한일루켄(주)의 비밀 사항이므로 절대 누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